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합56250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6. 29.

판결 선고2016. 8.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76,708,502원 및 그 중 274,544,082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276,708,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피고 C]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76,708,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76,708,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2013. 5. 3.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보증금액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3.부터 2014. 5. 2.로 정하여 보증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원고는 2014. 4. 7.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위 보증기한을 2015. 4. 30.까지 연장하였다.
-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5. 4. 30.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9. 11. 신한은행에 원금 269,996,364원, 이자 4,547,718원 합계 274,544,08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약금 2,164,420원이 발생하였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0.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회사는 2015. 3. 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4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D은 2015. 3. 24. 피고 C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708,502원(= 대위변제금 274,544,082원 + 위약금 2,164,4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4,544,0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5. 10.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피고 C은 E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피고 회사, 피고 C이 합의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피고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참조).

2) 부당이득 반환의무 피고 C이 D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보전의 필요성 갑 제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이고 피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4) 대위금액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38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276,708,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임태혁

판사장영채

판사심우성

별지